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의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해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2월 12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○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별표, 별지 서식등을 일괄 개정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사항 개정
 - 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⇒ 생년월일

3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[참조 : 기획예산과장(자치행정과장)], 전화 : 02-3423~5482(5192), FAX : 02-3423-8881, E-mail : hsowin82@gangnam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에 필요한 의견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(www.elis.go.kr)